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박 정·정성호·김병주

임오경 · 안규백 · 김성원

홍기원·허 영·송옥주

염태영 · 민병덕 · 소병훈

박지혜 · 이재강 · 김용태

의원(15인)

제안이유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었던 지역임. 그로 인해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된 상황임.

이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나,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의 질 차원에 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상황임.

반면 경기 북부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은 서울특별시전체 면적보다 7배나 넓어 무한한 성장잠재력도 가지고 있음.

또한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으로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임.

이에 본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 화시킴으로써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 나.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및 관할구역 규정(안 제7조).
- 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상 · 재정상 특별 지원 규정(안 제8조).
- 라.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 · 운영(안 제11조).
- 마. 경기북부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추진(안 제13조).
- 바.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및 지원 등 자치권 강화(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주민참여 예산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 자.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특례(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 차.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에 관한 특례(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 카.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 에 관한 특례(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 타.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에 관한 특례(안 제 48조).
- 파. 국가공기업에 업무협조 요청 규정 및 지역간 상생협력기금 설치 (안 제50조 및 부칙 안 제3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편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경기도 북부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경기 북부의 지역적 · 역사적 ·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 북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경기 북부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경기북부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경기도 북부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경기북부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낙후된 경기북부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기북부자치도의 책무) ① 경기북부자치도는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경기북부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경기북부자치도의 조례(이하"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경기북부자치도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경기북부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경기도의 책무) 경기도는 경기북부자치도가 정착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경기북부자치도의 조직 ·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경기북부자치도에 관하여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경기북부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기북부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경기북부자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

- 제7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한다.
 - ②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의정 부시·양주시·구리시·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으로 한 다.
 - ③ 경기북부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8조(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

기북부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기북부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경기북부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또는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 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경기북부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

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 (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 한다.
- ①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기북부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 령을 적용한다.

제2장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제11조(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경기북부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경기북부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1. 경기북부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2. 경기북부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기북부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 북부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경기북부자치도는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경기북부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자치권 강화

-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수 있다.
- 제15조(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 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 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 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 한다.
 -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자치도와의 인사교 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

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경기북부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 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 ·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경기북부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자치재정

-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 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

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9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감사위원회

-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감사위원장"이라 한다)

-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⑤ 경기북부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 무원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경기북부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 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2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 5. 제2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 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편 경기북부자치도의 기반 조성제1장 교육환경의 조성에 관한 특례

제29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경기북부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 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 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 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경기북부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 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31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 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

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32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 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 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33조(국제예술고등학교의 설립·운영) ① 경기북부자치도에 국제적 인 예술 전문 교육을 통해 국제적으로 재능있는 예술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예술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예술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한다.
- ③ 경기북부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대학의 설립·운영) ① 경기북부자치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농업 · 식품산업 · 임업 등 진흥 특례

- 제35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 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 2. 도로 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

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 및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촉진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 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촉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36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7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7조제1항 각호 및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경기북부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시·군 관할구역의 농지로서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적이 4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8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자치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 1. 경기북부자치도의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 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도지사"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제39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특례는 이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 개월 전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 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

-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 약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 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군 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1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

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 · 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 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 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 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 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 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 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 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 한으로 한다.

제42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 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 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 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

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2.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제43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 제4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기북부자치도 및 시·군이 설립한 지 방공기업의 임직원
-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북부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5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기북부자치도 안의 토지(이하"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 3.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경우
 -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 제4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 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기북부자치도 또는 관할 시·군

- 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 ⑤ 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4장 수도권 규제 특례

- 제48조(수도권 규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법률에서 정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적용하는 수도권의 범위에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3호 단서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3항제1호
 -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12호 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13호·제14호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제1호 제2호
 -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의2
 - 6.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제2항제8호

-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제2항
-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 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제24조·제29조
- 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78조, 제100조, 제101조, 제114조 및 제152조
- 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 항
- 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 ②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접경지역으로 하고, 경기북부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제4편 보칙

- 제49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 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0조(해외협력) 경기북부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 제51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경기북부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 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 2.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제53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 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

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 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 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역간 상생협력기금 설치 등) ①경기북부자치도 성장의 일정 부분을 지방 소멸지역의 지역상생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지역간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간 상생협력기금은 경기북부와 그 외 지방간 상생협력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